

[서식 예] 내용증명(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서-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 신 인 O O O 주 소

수 신 인 O O O 주 소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귀사는 본인이 20〇〇. 〇. 〇. 귀사로부터 금 〇〇〇〇〇〇원을 대출하였음을 이유로 본인에게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 3. 본인은 ○○지방법원 ○○○○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 ○. ○. 면책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는 채권자가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결국 본인은 귀사에 대해 부담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귀사는 본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귀사에서 계속 본 인에게 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 음을 통지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00. 0. 0.

위 발신인 ㅇㅇㅇ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 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 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